

【붙임 1】

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(8개)

국가별	규격인증		
미국	FCC (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)	FDA (미국식품의약국허가·등록제도) -의료기기 Class1-	FDA (미국식품의약국허가·등록제도) -화장품 등록(신규)-
유럽(EU)	CE (유럽통합규격인증) -전기전자, 통신 및 기계분야-		CPNP (유럽화장품등록)
일본	PSE (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)		
국제	IECEE-CB test (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)		HALAL (이슬람할랄인증)

※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(분야)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

※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

※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,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

· 고비용인증 :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·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